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09
----------	------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동현 의원 외 12명
- 나. 제안일 : 2020년 8월 11일
- 다. 회부일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동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사업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는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 제3조 1호를 따르며 “청년참여”, “청년참여기구”, “청년자율예산”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함(안 제14조).
- 청년 참여자문회의를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2020. 8. 26. ~ 9. 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 및 서울시 정책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청년시민회의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은 청년의 범위, 청년자율예산의 정의,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시민회의의 근거, 기능, 구성 및 운영기준 등임.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
제2조(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함. -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함.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함.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함.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제3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름. -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름.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함.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함.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함.
제4조(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 5 조 (청년자율예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함.
제 6 조 (청년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함. -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음. -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음. -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청장으로 함. -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참여기구는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함. - 청년참여기구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함.
제10조(위원의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임기는 1년의 임기 및 한 차례 연임으로 함. -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제11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둬.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함. -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둬.
제12조(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로 함. -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함. -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함.
제 13 조 (운영 위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 14 조 (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제 15 조 (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함.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함.
제 16 조 (청년 참여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를 열 수 있음. -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함.
제 17 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18 조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서울시는 민선 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18. 8.17.)에 따라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청년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청년자율예산을 심의·조정하도록 해 왔음.

〈청년자율예산제도 개요〉

- **청년자율예산 개념**

-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 당사자가 서울 청년 참여기구에 참여하며, 청년문제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청년자치·세대균형·미래혁신 가치에 기반하여 숙의와 토론 및 공론화를 통해 신규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기존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

- **청년자율예산 편성**

- (시정숙의형) 400억 원 내외, 서울청년시민회의 숙의 조정
- (자치구숙의형) 100억 원 내외,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 조정

- **추진절차**



- **2019년 청년자율예산사업(2020년도 시행) 총 31개 사업, 280억 원 편성**

-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109억 원) 등 31개 사업 280억 원 편성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 및 조정을 통해 정책과제 수립 진행.
- 〈서대문구 청년 세입자 권리찾기〉 등 자치구숙의형 총 64개 세부 사업 제안

- **2020년 청년자율예산 편성(2021년도 시행)**

- 제안숙의규모: 정책과제 174건, 126,586,143,000원
- 예산편성규모: 정책과제 77건, 32,400,050,000원
 - 분과숙의형 18건(6,357,497천원). 특별기획형 4건(20,608,000천원)
 - 자치구숙의형 55건(5,434,553천원)

-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면서 주민 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년청에서는 준비미흡, 성과위주의 조급주의 등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정없이 동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 행정사무 감사 및 업무보고시 조례에 근거가 필요함이 제기되었고, 동 제정안은 사후치유적인 조례제정이라고 하겠음.
- 청년청의 법적 절차 미준수, 선(先) 제도 시행후 법규상 근거 마련식의 반복적인 행태는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 청년의 어려운 현실, 청년 참여의 미흡 등 오늘날 청년이 처한 현실을 살펴볼 때 청년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 이로 인해 추후 청소년 참여예산, 50+ 참여예산 등 계층별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가능성 및 이러한 세대간 구분된 참여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동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 및 청년참여기구의 존속기한 명시를 통한 청년의 구분된 참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검토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시 시민참여에 대한 일반 조례(「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특별히 청년참여예산만을 규정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지 여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반영으로 통일적 운영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및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별도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경우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서울시 청년참여예산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안 제5조)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기본이념(안 제2조), 정의(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및 청년자율예산의 범위(안 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인식한다.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호가 두 번 반복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범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청년참여 활성화(안 제6조)

- 안 제6조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홍보, 인력양성,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 서울시 청년제도와 관련된 일반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 제정안 제6조는 청년기본조례와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제정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이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다양한 청년참여를 제도화하고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의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동 제정안에는 제정안의 목적대로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p>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

	<p>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p> <p>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p> <p>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	---

3) 청년참여기구(안 제7조~안 제14조)

-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청년참여기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p>①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p> <p>②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p> <p>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p> <p>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청장으로 한다.</p> <p>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p>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p>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p>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p>① 청년참여기구는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p> <p>③ 청년참여기구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④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p>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의 임기 및 한 차례 연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시 청년 참여기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나, 법규상의 근거없이 운영하여 왔으며, 금번 제정안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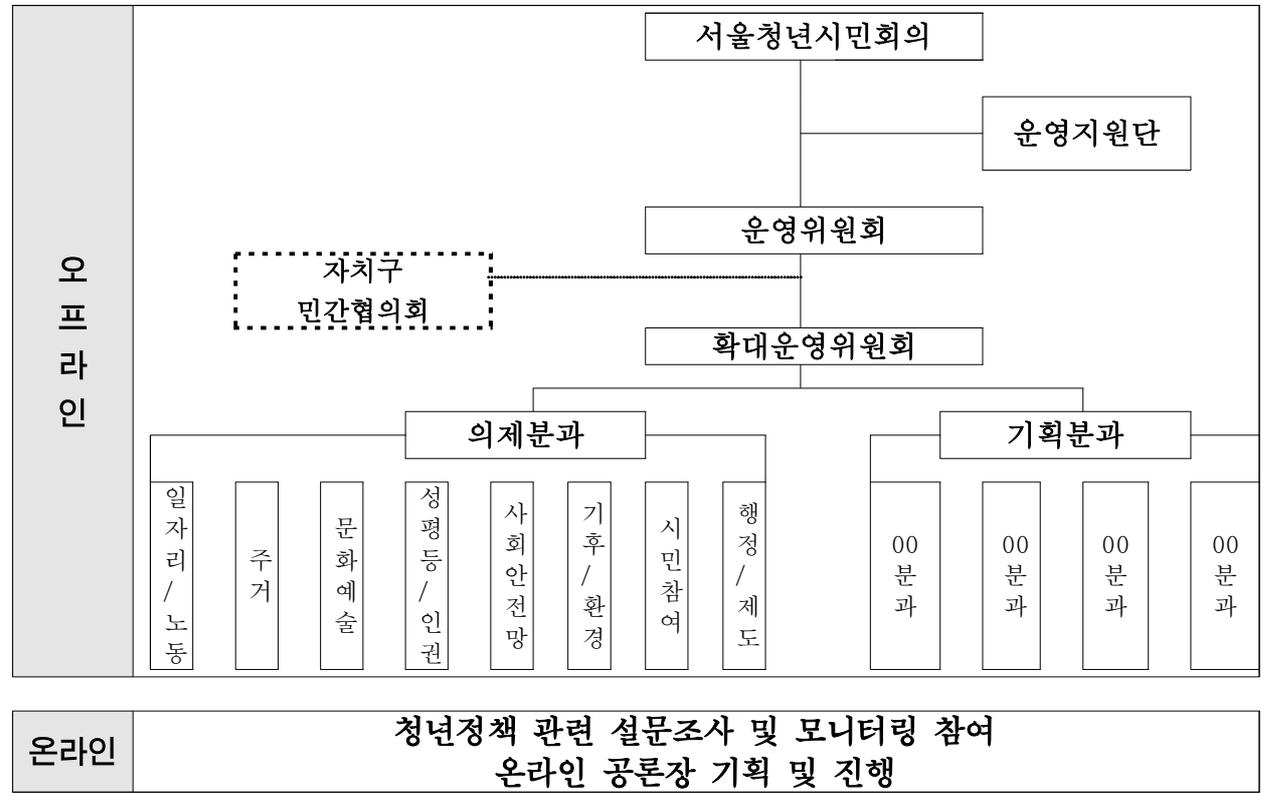
- 다만, 청년청에서 청년 참여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명칭과 조직이 있음에도 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정안은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네트워크”)의 총회인 ‘서울청년 시민회의와 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인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 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 명 칭: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유 형: 서울청년시민위원(오프라인 활동), 온라인 정책패널(온라인 활동)
- 구 성: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 임 기: 1년 (위촉일로부터 다음연도 개회 전일까지)
- 비 고: 공개적인 방식을 통한 연중 상시 모집 진행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개요〉

- 운영목적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해법을 모색하고 청년의 지속적인 시정참여 확대 도모
- 운영체계 : 청년시민위원, 활동분과, 운영위원장, 정책지원단, 운영지원단 등
- 구 성 : (오프라인)청년시민위원, (온라인)청년정책패널 모집



- 제정안 제8조의 청년참여기구의 기능을 살펴보면, 각 사항을 직접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청년참여기구의 주된 목적과 기능이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인바, 그에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청년청에서는 유사한 취지의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정안	청년청 수정의견
<p>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u>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p>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 <u>권고</u>할 수 있다.</p>	<p>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u>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u>건의</u>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u>건의</u>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u>심의·조정</u> <p>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 <u>건의</u>할 수 있다.</p>

- 제정안 제14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정안 제7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난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2020.8.7.)에서 참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오히려 더 많은 참여를 제약하게 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된바 있음.

- 500명 이하로 구성되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에게 매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한 참여의 비용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청년청에서는 동 수당규정의 삭제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정안	청년청 수정의견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4) 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하며,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5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 다만, 청년참여예산만 별도의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 이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사업 심사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중적 심사기준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갈등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19. 12. 31.>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 한편,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라는 표현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할 수 있는 수용성 차원에서는 용인될 수 있으나,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의 혈세로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적정한 용어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청년 참여자문회의(안 제16조~안 제17조)

-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제정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참여자문회의를 구성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6조(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청년청에는 다양한 위원회를 이미 운영중이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위원이 1/2 이상 포함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하는바, 청년자율예산에 대해서만 자문하는 별도의 자문기구의 구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청년의 범위, 청년참여기구의 기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809
----------	-------------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청년의 범위, 청년참여기구의 기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안 제7조제4항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청장으로 한다.” 를 “청년참여 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사항” 은 “사항 건의” 로 하며, 안 제8조제1항제3호 중 “사항” 은 “사항 심의·조정 ”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권고” 를 “건의” 로 한다.

안 제10제1항 중 “1년의 임기 및 한 차례 연임으로 한다.” 를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u>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u>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u>1. <삭 제></u>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청장으로 한다.</u>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u>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u>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u>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u>사항</u>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u>사항</u>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u>사항</u>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u>사항 건의</u>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u>사항 건의</u>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u>사항 심의·조정</u>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u>권고</u> 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u>건의</u>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u>의 임기는 1년의 임기 및 한 차례 연임으로 한다.</u>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u>의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u>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제14조 <삭 제></u>

제15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6조(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5조(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 ①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 ②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 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건의
 -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청년참여기구는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③ 청년참여기구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 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5조(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 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809
----------	-------------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청년의 범위, 청년참여기구의 기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안 제7조제4항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청장으로 한다.” 를 “청년참여 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사항” 은 “사항 건의” 로 하며, 안 제8조제1항제3호 중 “사항” 은 “사항 심의·조정 ”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권고” 를 “건의” 로 한다.

안 제10제1항 중 “1년의 임기 및 한 차례 연임으로 한다.” 를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u>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u>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u>1. <삭 제></u>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청장으로 한다.</u>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u>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u>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u>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u>사항</u>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u>사항</u>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u>사항</u>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u>사항 건의</u>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u>사항 건의</u>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u>사항 심의·조정</u>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u>권고</u> 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u>건의</u>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u>의 임기는 1년의 임기 및 한 차례 연임으로 한다.</u>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u>의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u>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제14조 <삭 제></u>

제15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6조(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5조(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및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건의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청년참여기구는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청년참여기구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 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5조(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 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